

용도		구비서류 및 설명
우선순위 대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증장애인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</li> <li>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 증명서(기준중위소득 60%이하만 해당)</li> <li>- 다문화가족 :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또는 국적 취득자(귀화 증빙서류)</li> <li>- 기초생활수급자 : 수급자 증명서 또는 확인서</li> <li>- 차상위계층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(국민건강보험공단)</li> <li>· 한부모증명서(시군 행정지원센터)</li> <li>· 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확인서</li> <li>· 자활근로서 확인서</li> <li>·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</li> <li>·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자 소득인정액증명서</li> <li>· 그 외 차상위계층 해당자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서류</li> </ul> </li> </ul>
가구 원수 확인 (공통)	국민 또는 재외국민	○ <b>주민등록표 등본</b> (세대주와 세대원 포함)
	국내 거주 외국인	1) <b>외국인등록사실증명</b> - 국내거주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’ 발급이 안 되므로,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미가입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(아래)를 제출
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(1인가구)		○ <b>건강보험자격(득실)확인서</b> 또는 <b>건강보험증</b> 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, 전화 : 1577-1000) -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- 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’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로 따로 발급, ‘건강보험자격확인서’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등재된 서류이므로 한 장만 발급받아 제출 ※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소득요건 파악 - 지역보험의 경우 ‘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’에 피보험자와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래 3) 기재 서류 생략 가능 - 피부양자 등록사실은 ‘건강보험증’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
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 (1인가구)	건강 보험 가입자	○ <b>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</b> 또는 <b>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</b>
	근로 소득자	○ <b>아래 서류 중 택일</b>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보수지급명세서 ③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④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(국민연금공단 발행) ⑤ 소득금액증명서(세무서장 발행)
	사업소득자	○ 사업자등록증 사본(필수) ○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(필수) ○ 소득금액증명원(필수)